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⑤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이 제23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포함)"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 단서중 "매각"을 "분할매각"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

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중 "한 변의 길이"를 "크기"로,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공인의 재료)"을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공인의 교부·등록)"을 "(공인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 중 "교부받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하며, 같은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부"를 각각 "등록"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의 제목중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하고, 같은조제1항 중 "교부기관"를 "등록기관"으로, "재교부요청"을 "재등록신청"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 중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를 "서울특별시총무과"로 하고, 같은조제3항 중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삭제 및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고)

서울특별시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4조 중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교부기관"을 "등록기관"으로 하며,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1 및 별지 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공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88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2001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가. 개정이유
  "맹인"이라는 용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시립맹인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시립맹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안석수)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맹인"이라는 용어를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시립맹인복지회관"의 명칭을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맹인을 법적 용어인 시각장애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표기로 생각하며, 또한 복지관이 소재한 지역명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은 유사시설과의 혼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에관한검사·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89

2001년 6월 일
보건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2001년 6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가. 개정이유
  의약품 및 식품 등에 대한 시험수요에 부응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및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이 개정·시행(2001.1.18, 보건복지부령 제187호)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우리 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수수료를 조정하고, 일부 검사·시험분야 및 항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검사·시험항목 등에 대한 수수료 조정 (안 별표 1)
  ○보건복지부령 수수료 준용 : 238건
  ○행정자치부 원가분석요령에 의한 수수료 재산정 : 1건
  ○검사·시험항목 신설로 인한 수수료 책정 : 2건
  ※ 현행 조례에 의한 수수료 유지 : 132건
  (2)검사·시험항목 신설, 통·폐합 및 정비·보완(안 별표 1)

20개 분야 32개 세부분야 424개 검사·시험 항목 (현행)
⇓
15개 분야 26개 세부분야 373개 검사·시험 항목 (개정)